#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65

발의연월일: 2022. 7. 20.

발 의 자:김희곤·하영제·박성민

윤재옥 • 박정하 • 이명수

박대수 • 권명호 • 안병길

구자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회원·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 할부금융 관련 주요 거래조건 안내 역시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제16조제7항 및 제10항, 제17조제2항, 제39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서면으로 내주어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로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5항에 따른 약관 및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16조제7항 중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14조(신용카드 · 직불카드의 발 제14조(신용카드 · 직불카드의 발 급) ① ~ ④ (생 략) 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⑤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 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 면(書面)으로 <u>내주어야 한다.</u> <u>공해야 한다.</u> <u><단서 삭제></u>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 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 낼 수 있다. <신 설>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5항에 따른 약관 및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 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 1. 서면교부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 ~ ⑥ (생 략)

-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⑧ ~ ⑨ (생 략)
- ① 신용카드회원이 <u>서면으로</u>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 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 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계약은 <u>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u>,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저
<u>기할 경우</u>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면 또는 전</u> 지
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
<u> </u>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할 지 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 (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39조(거래	조건의	주지	의무)	1
	다음 🌣	각 호의	의 사형	}을
제공해야	한다.	<단서	삭제>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u>1. 서면교부</u>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